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한 추가 협조요청

1. 관련 규정

-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나. 코로나19 건설업 방역지침(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9, 2021.2.9)
- 다.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1139, 2021.8.4)

2. 우리부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코로나 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 비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계약집행지침을 시행('21.8.4)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한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 공지
- 콜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4. 아울러 협회에서도 공사현장 코로나 예방이 강화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회원사 등에 적극 안내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해양경찰청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운영지원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국회의장, 우정사업본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국립통일교육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행정사무관

이영수

계약정책과장

전결 2021. 9. 23.

조규산

협조자

시행 계약정책과-1307

(2021. 9. 23.)

접수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 www.moef.go.kr

전화번호 044-215-5214

팩스번호 044-215-8113

/ ys7024@korea.kr

/ 대국민 공개